



「원비즈플라자 멤버십 적금」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상 품 명 : 「원비즈플라자 멤버십 적금」

· 상품특징 : 원비즈플라자 회원사를 위한 특판 정기적금

※ 원비즈플라자란? 입찰 요청부터 계약, 발주 관리까지 모든 구매 및 발주에 필요한 기능과 금융지원까지 한꺼번에 제공하는 공금망 금융 플랫폼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 상세조회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실명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1인 1계좌) (금융회사 등 및 기관투자가 제외)			
상품유형	• 정기적금 (정액	정기적금 (정액적립식)			
거래방법	• 신규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가입금액	• 월 100만원 이	월 100만원 이하로 지정한 금액			
계약기간	• 12개월	12개월			
적용이율	• 적용금리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기본금리는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금리 적용				
(세금납부 전 '25.07.01. 기준)	계약기간	기본금리	최고금리	비고	
	12개월	연 1.20%	연 4.20%	우대금리 충족 시	

구 분	H 용			
우대이율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조건별 우대이율 적용 • 적용조건 : 우대금리는 아래 각 호 모두를 충족하고 만기 해지 시점까지 모두 유지한 경우 각 항목별 합산 최대 연 3.0%p 우대금리 적용 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1. 적금 만기시점의「원비즈플라자」가입 고객에 대한 멤버십 우대 : 연 2.0%p ^{주1)} 2. 신규일 1개월 후부터 만기 2개월 전까지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평균 잔액을 5백만원 이상 유지 : 연 1.0%p ^{주2)}			
	주1) · 적금 만기시점까지 원비즈플라자(http://www.wonbizplaza.com) 가입 시 우대 제공 주2) · 신규일 1개월 후 월부터 만기 2개월 전까지의 평균 잔액으로 우대 제공 (예시) 2024년 3월 5일 가입 후, 2025년 3월 해지 시 2024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평균 잔액이 5백만원 이상 유지 시 우대 제공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 + 지방소득세(1.4%)) ※ 적용세율은 2025.07.01.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이자계산방법	• 정액적립식 : 월 저축금을 매월 정한 날짜에 입금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계산한 후 총 합계 금액을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이율 적용			
만기후이율	경과기간이 율1개월 이내만기시점 약정이율 × 50%1개월 초과~6개월 이내만기시점 약정이율 × 30%6개월 초과만기시점 약정이율 × 20%※ 약정이율 : 만기(또는 재예치)시점 일반정기적금 기본금리			

구 분 내용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 산한 이자를 합계 (워미만 절사) [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일수(입금일~만기일 전일)/365 12회차 만기일 . . . 만기이자 산출근거 입금금액 x 이자육 x 예치일수/계약기간 입금금액 x 이자율 x 예치일수/계약기간 입금금액 x 이자율 x 예치일수/계약기간 입금금액 x 이자율 x 예치일수/계약기간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워미만 절사) 보유기간 이 율 비고 중도 3개월 미만 연 0.1% 해지이윸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기본이율×**50%**×보유일수/계약일수 기본이율×**70**%×보유일수/계약일수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최저이율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기본이율×**80**%×보유일수/계약일수 연 0.15% 11개월 이상 기본이율×**90**%×보유일수/계약일수 ※ 기본이율 :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



※ 위 그림은 적용율, 중도해지개월수, 계약월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닙니다.

구 분	내 용 uk.com uk.com		
예금자보호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세제혜택	가능	• 개인사업자에 한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만기앞당김	가능	• 모든 회차의 월 적립액을 입금한 예금으로서 만기일 前 1개월 내 가능 ※ 단, 만기앞당김 해지로 우대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우대금리 적용 불가 주의	
재예치	불가능	• 해당사항 없음	
부분인출	불가능	• 해당사항 없음	
양도	불가능	• 공동명의 가입 및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 불가	
담보제공	가능	•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의 95%까지 가능	
계약해지방법	•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계좌의 만기가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어서 전 영업일에 해지할 경우 '만기 앞당김 지급'과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단, 계약기간 1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		
위법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구 분	내 용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후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판매한도	• 1만좌 (판매 한도 소진 시, 별도 안내 없이 판매 자동 종료 됨)	
판매기한	• 2025년 12월 31일	

요 우리은행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 기업금융솔루션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평일 9:00 ~ 18:00) 또는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